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제1절 정의 및 총칙

제1조

이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와 표현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서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가- 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나- 국: 지식재산권국

다- 임치등록부: 지식재산권국이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학저작물·예술저작물·학술저작물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차후의 처분행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등록부

라- 컴퓨터: 자료 및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저장, 처리, 분석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전자기계

마-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를 통하여 원상태로 또는 기타 다른 형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업무의 실행이나 결과의 도출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언어, 암호 또는 기호로 표현하는 일련의 명령과 지시

바- 데이터베이스: 언어, 암호 또는 기타 형태로 창의적으로 정보를 배열 및 나열하고 보호대상이 되며, 컴퓨터를 통하여 또는 기타 형태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

사- 공동운영허가: 상공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업무를 운영 및 이행하기 위한 단체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설립에 대

하여 공표하는 승인

제2조

상공부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공식적인 승계인이 없는 때에는 법으로 정한 권리의 보호기간 만료 후 상황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제5조와 제15조에 명시한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인격권을 행사한다. 상공부는 저작물이나 실연을 보호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상기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방식과 절차를 이행한다.

제3조

제3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한 후 그의 동의 없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제20조에 명시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허용되는 목적의 한도 내에서 이행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다음의 목록에 따라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배상액
비영리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	100오만리알
비영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행위	100오만리알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	각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1000오만리알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행위	각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1000오만리알

배상액에는 발생한 모든 피해액을 포함한다. 권리자는 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한 피해와 예측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아니한 기타 피해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이나 담보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500오만리알로 정한다.

위반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관할세관당국에서 세관통관절차중지에 관하여 공표한 결정에 의거하여 권리자의 요청 시 관할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장소나 권리자와 협의한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제6조

상공부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명시한 권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의 당사자가 상공부의 분쟁조정안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하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과정에서 상공부가 마련한 문서에 서명한 후에는 분쟁의 조정을 부인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제7조

상공부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관하여 공포한 법정확정판결 및 행정결정을 공고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망을 통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도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임치규칙

제8조

권리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저작물을 공표 또는 공개하기 전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해당양식에 따라 임치 후 일련번호 취득신청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신청인의 성명, 국적, 특징, 주소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위임장
- 나- 저작자의 성명, 국적, 생존한 상태인 경우 주소지 또는 사망상태인 경우 사망일
- 다-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라- 저작물 제작작업을 수행한 기관의 명칭, 주소 및 기관과 저작자 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마- 저작물,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목과 종류
- 바- 기타 지식재산권국에서 추가로 요청한 항목

제9조

신청인 또는 저작자는 임치신청서제출 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부분 3부를 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임치 시 10오만리얌에 달하는 수수료와 임치증명서의 원본에 준하는 사본 취득 시 5오만리얌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11조

신청인 또는 저작자는 국내 임치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로 저작물을 임치한 경우 국외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임치사실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한다.

제13조

모든 자는 5오만리얌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식재산권국의 임치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모든 자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지정형식에 따라 임치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오만리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권리자는 지식재산권국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오만리얌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 소유에 관한 항목 등 상공부가 발급한 임치증명서에 기재된 항목은 다르게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한 항목으로 본다.

제17조

권리자는 지식재산권국이 지정양식에 따라 발급한 임치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3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공동관리

제1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재산권에 대한 공동운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타 기관은 활동을 이행하기 전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상공부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공동운영활동허가를 받기 위한 단체 및 기타 기관이 제출한 신청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20조

단체운영허가신청서는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공부에 제출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가- 허가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서류와 정관

- 나- 수익의 취득 및 배분체계를 포함한 허가신청인의 내부규칙
- 다- 허가신청인과 이에 소속된 자 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 라- 허가신청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마- 공동관리활동을 위임 받은 운영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바- 공동관리활동의 본점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해당활동을 위하여 원산지국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허가증 사본
- 사- (존재 시)허가신청인에 소속된 수인의 명부

제21조

공동운영허가신청서에 대하여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활동에 대한 허가증은 상공부결정에 따라 3년간 발급하고 이 기간인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수수료 납부 후 갱신이 가능하며,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

각 공동운영허가에 대하여는 3000오만리얄, 허가의 갱신에 대하여는 3000오만리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23조

허가취득자는 회원명부 및 재산권을 관리하도록 위임 받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프로그램의 목록을 기재한 장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원명부 또는 저작물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허가취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체에 관계된 자의 재산권관리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허가취득자는 회원의 권리에 대한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6개월마다 계산서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제26조

허가취득자는 상공부의 감사와 회원 및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허가취득자는 상공부에서 승인한 회계사무소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8조

허가취득자는 회원이 저작물의 관리로 인한 재산상의 수익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공부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허가취득자를 통하여 공제되는 운영상의 비용은 발생한 수익의 3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공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이 비용을 삭감할 수 있으며 또한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30조

허가취득자가 이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공부는 위반행위의 사유를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제31조

상공부는 허가취득자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의 사유를 시정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기 명시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 대한 허가취득자의 의무는 존속하며 상공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공동운영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규정에 따라 재산권운영허가를 취득한 다른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제33조

상공부는 공동운영으로 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다른 기관에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

특정기관에 2개 이상의 공동운영허가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